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

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6. 12. 13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12월
11일 마포구
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42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('96. 12. 13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문엽승

가. 개정이유

○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맞는 기구개편으로 세수증대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부과·징수업무를 일원화시켜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 개정골자

○ 세무관리과, 부과과를 "세무1과, 세무2과"로 각각 변경하여 부과·징수업무의 일원화로 세수증대 및 민원인 편의 도모(안,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 동 개정조례(안)은 부과와 징수업무를 이원화시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도록 지난 '95년 3월 14일 조례 제284호로 세무 1, 2과를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기구를 개편하여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구분 시행하였으나, 시행과정에서 세수증대 및 민원인 편의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시 환원함으로써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원화시켜 세수증대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

○ 개정되는 내용은 세목구분에 따라 세무 1, 2로 구분되며 세무1과에서는 부과·징수업무 이외의 구 세입 및 현계총괄, 세외수입, 구세 및 수수료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, 세무2과에서는 부과·징수업무 이외에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

담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5. 토론요지 : 없음.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8. 기타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

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6. 12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화 시대의 행정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기구개편으로 세수증대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부과·징수업무를 일원화 시켜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세무관리과, 부과과를 "세무1과, 세무2과"로 각각 변경하여 부과·징수업무의 일원화로 세수증대 및 민원인 편의 도모(안, 제5조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5. 12. 29 법률 제5, 069호) 제15조, 제102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1995. 12. 28 대통령령 제14841호) 제10조

4. 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불필요

첨부 : 1.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
중개정조례(안)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

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“세무관리과·부과과”를 “세
무1과·세무2과”로 하고, 동조 제3항 및 제
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
다.

1. 구세입 및 현계총괄
2. 자동차세·차량취득세·차량등록세·건설
기계취득세·건설기계등록세 부과·징수
에 관한 사항
3. 면허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4.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
5. 구세 및 수수료 관련 법규, 조례, 규
칙 등의 관리 및 제·개정 등에 관
한 사항

④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
다.

1. 부동산 취득세 및 부동산 등록세·재
산세·종합토지세·농지세 부과·징수에
관한 사항
2. 지역개발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의
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3. 도축세·경주·마권세·담배소비세 부과
·징수에 관한 사항
4. 주민세·사업소세 부과·징수에 관한
사항
5.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등에
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1997년 1월 1
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 서울특별시마포
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증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세무관리과장”을 “세무1과
장”으로 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7조(재무국) ① 재무국에 재무과·세무관리과·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세입의 총괄(일반회계·특별회계 포함) 2. 취득세·등록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3.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농지세 징수에 관한 사항 4. 자동차관련 각종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5. 자동차관련 각종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6. 사업소세·도축세·마권세 및 면허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7. 구세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8.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<p>④ 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취득세, 등록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2.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농지세 및 목적세 부과에 관한 사항 3.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4. 자동차관련 각종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5. 사업소세·도축세·마권세 및 면허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6. 토지등급설정·수정 및 과세표준액 조정에 관한 사항 7. 기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<p>⑤ (생략)</p>	<p>제5조(재무국) ① 재무국에 재무과·세무1과·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세입 및 현계 총괄 2. 자동차세·차량취득세·차량등록세·건설기계취득세·건설기계등록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3. 면허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징수 4.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. 구세관련 법규, 조례, 규칙 등 관리 및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 6. 수수료 관련법규, 조례, 규칙 등 관리 및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 <p>④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동산 취득세 및 부동산 등록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2. 지역개발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3. 도축세·경주·마권세·담배소비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4.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등에 관한 사항 5. 주민세·사업소세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